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663 무고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명호(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혜현(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고단12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CCTV 영상에도 B은 피고인에게 '이 길이 다 당신 것이냐'고 항의하는 취지에서 손을 앞뒤로 흔들며 땅을 가리켰을 뿐 팔을 어깨 위로 올려 피고인을 때리려는 태세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② B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한 적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고령에 청력이 좋지 않은 B으로 하여금 B이 피고인의 뺨을 때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다른 사건과 이 사건을 혼동하도록 유도신문을 한 데 따른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B은 검사의 주신문과 제주신문에서 일관하여 손을 앞뒤로 흔들며 땅을 가리키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B은 피고인보다 체격이 현저히 작은 연로한 노인이므로, B이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B이 피고인에게 때릴 듯한 동작을 취했고, 피고인은 이를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배척)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내재한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준 _____

 판사 정소영 _____

 판사 김승섭 _____